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한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140
----------	--------

발의연월일 : 2025. 11. 14.

발의자 : 이한동 · 강동오 · 권인순
김승수 · 신종갑 · 안미자
오옥자 · 이상원 · 채우진
최은하

1. 개정이유

8월 17일 마포구 관내 아파트에서 배터리 열폭으로 추정되는 화재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함.
공동주택 내 스프링클러 설치는 1990년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16층 이상 층에 의무화되기 시작하여 2005년 11층 이상 공동주택의 모든 층, 2018년엔 6층 이상 공동주택의 모든 층에 설치하도록 강화됨.

8월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의 경우 2005년 이전에 건축되어 화재가 발생한 14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어 화재 초기 진압이 어려웠음. 2023년 11월 기준 마포구 소재 공동주택 76,965세대 중 2005년 이전 준공된 공동주택은 40,279세대에 달해 관내 구축아파트들의 화재 안전 확보가 필요하나 스프링클러 설치는 예산상의 문제로 어려운 실정임.

이에 화재 예방과 조기 진압 및 대피를 위해 옥내소화전과 경보설비 등 노후 소방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마포구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공동주택 지원대상 중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소방설비 지원 조항 신설(안 제4조제1항제2호파목 및 별표 1).

3. 관계 법령

- 1)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제1항, 제85조제1항
-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4. 조례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6. 기타사항

- 가. 관계법령: 붙임
- 나. 입법예고: 2025. 11. 6. ~ 11. 11.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파목을 하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옥내소화전설비 개선 및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설치 ·

개선

별표 1 제1호나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 원 사 업	마포구 지원율	공동주택 분담률	비 고(증감률)
1.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60	40	
2. 경로당의 보수	60	40	
3.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50	50	
4.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 · 개선	50	50	
5.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 · 개선	50	50	
6.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	50	50	
7. 담장·옹벽 등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 · 보강	50	50	
8.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50	50	
9.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 개선	50	50	
10.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50	50	
11. 주도로(경계석이 있는 차도와 보행로로서 불특정 다수가 공동 이용하는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50	50	
12. 수목 식재	60	40	
13. 옥내소화전설비 개선 및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설치·개선	50	50	
1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0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0세대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소형 임의관리대상(100세대 이하)은 지원금의 10% 증액·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지원대상) ①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2. ----- ----- -----. ----- ----- ----- ----- ----- -----.
가. ~ 타. (생 략)	가. ~ 타. (현행과 같음)
<u><신 설></u>	<u>파. 옥내소화전설비 개선 및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설치 및 개선</u> <u>하. (현행 파목과 같음)</u>
<u>파. (생 략)</u>	<u>3. (현행과 같음)</u>
3. (생 략) ② ~ ④ 삭 제	<u>3. (현행과 같음)</u>
⑤ (생 략)	<u>⑤ (현행과 같음)</u>

[별표 1] <개정 2019.10.10., 2020.12.3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제4조제1항 관련)

1. 지원비율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제4조제1항제1호의 각 목>

(단위 : %)

지 원 사 업	마포구 지원율	공동주택 분 담 률	비 고(증감률)
1.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보안등, CCTV의 설치·유지	70	30	▪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은 지원금의 10% 범위에서 증액 가능
2.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70	30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범위에서 증액 가능
3.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70	30	▪ 300세대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4.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70	30	▪ 소형 임의관리대상(100세대 이하)은 지원금의 10% 증액
5. 주민 참여형 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70	30	▪ 그 밖의 공동주택활성화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6.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	70	30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7.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0	40	
8.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60	40	
9.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보수	60	40	
10.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60	40	
11. 단지 내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60	40	
12.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60	40	
13.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공동수도료	60	40	
1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0	40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제4조제1항제2호의 각 목>

(단위 : %)

지 원 사 업	마포구 지원율	공동주택 분 담 률	비 고(증감률)
1.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60	40	▪ 300세대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
2. 경로당의 보수	60	40	▪ 소형 임의관리대상(100세대 이하)은 지원금의 10% 증액
3.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50	50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에서 지원 가능
4.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50	50	
5.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개선	50	50	
6.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	50	50	
7. 담장·옹벽 등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50	50	
8.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50	50	
9.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 개선	50	50	
10.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50	50	
11. 주도로(경계석이 있는 차도와 보행로로서 불특정 다수가 공동 이용하는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50	50	
12. 수목 식재	60	40	
13. 옥내소화전설비 개선 및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설치·개선	50	50	
1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0	5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추가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신청 및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개선 및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설치·개선' 항목이 추가되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도시관리국 주택상생과 안용훈
연락처	02-3153-9306

【관 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

제85조(관리비용 등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충간소음 개선을 위한 충간소음의 측정·진단에 필요한 비용(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 시설등의 설치 · 관리와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소방 기술 · 기준의 개발 및 조사 · 연구,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 · 시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이하 “화재예방정책”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관계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재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